

폐기물 수탁 및 재활용 내용

① 구분	② 폐기물 종류 (분류번호)	③ 수탁량 (톤)	④ 성질 · 상태	⑤ 재활용방법	⑥ 재활용량(톤)	⑦ 재활용 제품 생산량(톤)	⑧ 보관량(톤)
합 계							

잔재물 발생내용

잔재물 처리내용

⑨ 구분	⑩ 폐기물 종류 (분류번호)	⑪ 발생량 (톤)	⑫ 성질 · 상태	⑬ 처리자 구분	⑭ 처리방법	⑮ 처리량(톤)	⑯ 보관량 (톤)	⑰ 처리자 (장소)명
합 계								

작성방법

- ①란 및 ⑨란은 수탁(잔재)폐기물의 종류별 연번을 적습니다.
- ②란 및 ⑩란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.
- ③란 및 ⑪란은 수탁(잔재)폐기물량을 적습니다.
- ④란 및 ⑫란은 폐기물의 성질·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.
액상[1], 고상[2]
- ⑤란은 폐기물의 재활용방법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분류번호)을 적습니다.
- ⑥란 및 ⑮란은 수탁(잔재)폐기물의 처리량을 적습니다.
- ⑦란은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활용 제품량을 적습니다.
- ⑧란 및 ⑯란은 수탁(잔재)폐기물의 미처리 보관량을 적습니다.
- ⑬란은 배출자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"자가"로 적고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"위탁"으로 적습니다. 다만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병기합니다. (예: 위탁[2])
[1] 폐기물처리 신고자, [2] 중간처분업자, [3] 최종처분업자, [4] 중간재활용업자, [5] 최종재활용업자, [6] 종합재활용업자, [7] 해양배출업자, [8]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, [9] 공공처리(국가)시설, [10] 기타
- ⑭란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.
- 양은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되,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적습니다.
- ⑨란부터 ⑰란까지에서 "잔재물"이란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 서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.

우〇〇〇-〇〇〇 / 주소 / 전화번호()〇〇〇-〇〇〇〇 / 전송()〇〇〇-〇〇〇〇
 담당부서 담당자